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나137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손성락, 송명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피고, 항소인 1. B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실
담당변호사 채희상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4. 선고 2020가단5230287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과 피고 B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매매예약 및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274,865,8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4,865,8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는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이정형, 판사 구광현